

신용정보활용체제

제정 2023. 03. 20

I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- (1)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
- (2) 기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(1) 식별정보 :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 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- (2) 신용거래정보 : 개인신용거래정보, 기업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등

II. 제공 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제공대상자 :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: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: 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

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보유 및 이용기간 :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IV. 신용정보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

해당사항 없음

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1. 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

2. 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
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

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 처리담당자

신용정보관리 보호인 : 준법감시인 장인근 (02-6744-060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